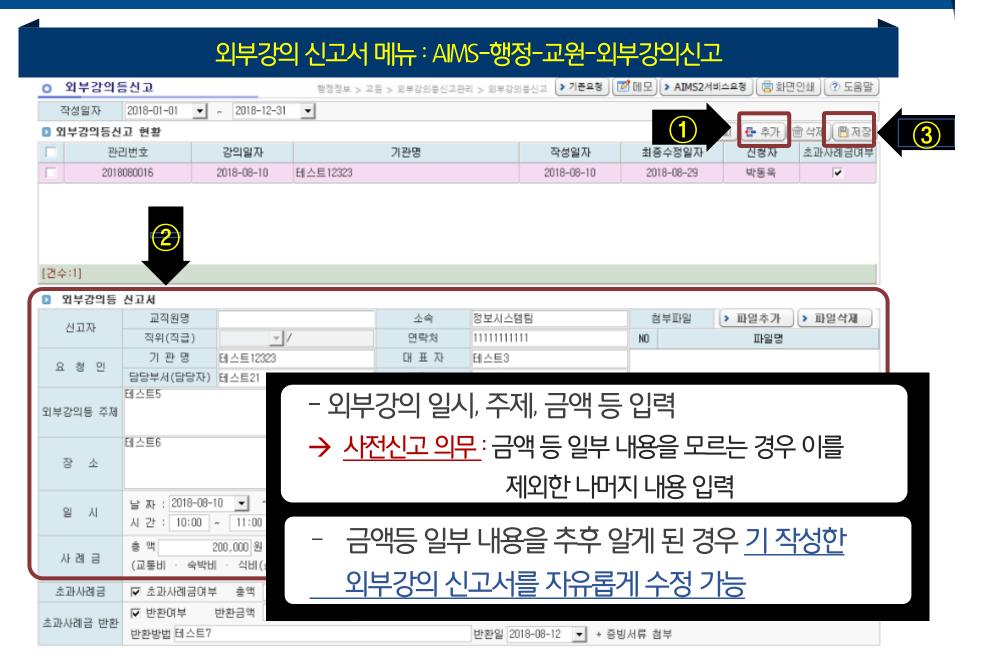


외부강의 등 신고 매뉴얼

투명사회로 도약하는 새로운 전환점

외부강의 신고서 등록 및 신청



사전신	고 위반시	주의 화면					
[건수:2] 외부강의등 신고서			🔄 아주!	대학교 AIMS2	×		
신교자	교직원명 직위(직급)	박동욱	0	청탁금지법 제2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의사항을 알려드리오 니 신고시 청탁금지법 사전신고 의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. 청탁금지법 제10조 2항에 의거 외부강의동은 반드시 사전에 서 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. 청탁금지법 제10조(외부강의동의 사례금 수수 제한) ② 공직자동		1일추가 파일명	> 파일삭제
요청인	기 관 명 담당부서(담당자)	기관명 담당부서명(담당자명)					
강의주제내용 외부강의등 주제				응 역 음자 답 세 (12)(외부당의 등의 자네금 부구 세만) 영 중 특자 등 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 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 여야 한다. 다만,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지단체 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		
장소	장소위치			만일 사전당시 상세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 일부사랑을 알수 없는 경우 일단 사전신고를 하시고 추가사랑은 해당사랑을 알게 된 이후 지제없이 수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.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 (외부강의동의 신고)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.			
일 시	날 짜 : 2018-08-3 시 간 : 10:00				71		
사 례 금	총 액 (교통비 · 숙박비	500,000 원 (※ 1회 평균 대가 [· 식비(1 10,000 원 별도)(×	확인	ו		
4.71.1176.77		1					

다만, 일부사항 사례금 총액등을 미리 알수 없는 경우 이를 제외한 사항에 대해 사전 신고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해야 합니다. (동법 시행령 26조 2항)

외부강의는 반드시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. (청탁금지법 제10조 2항)

외부강의 사전 신고 준수